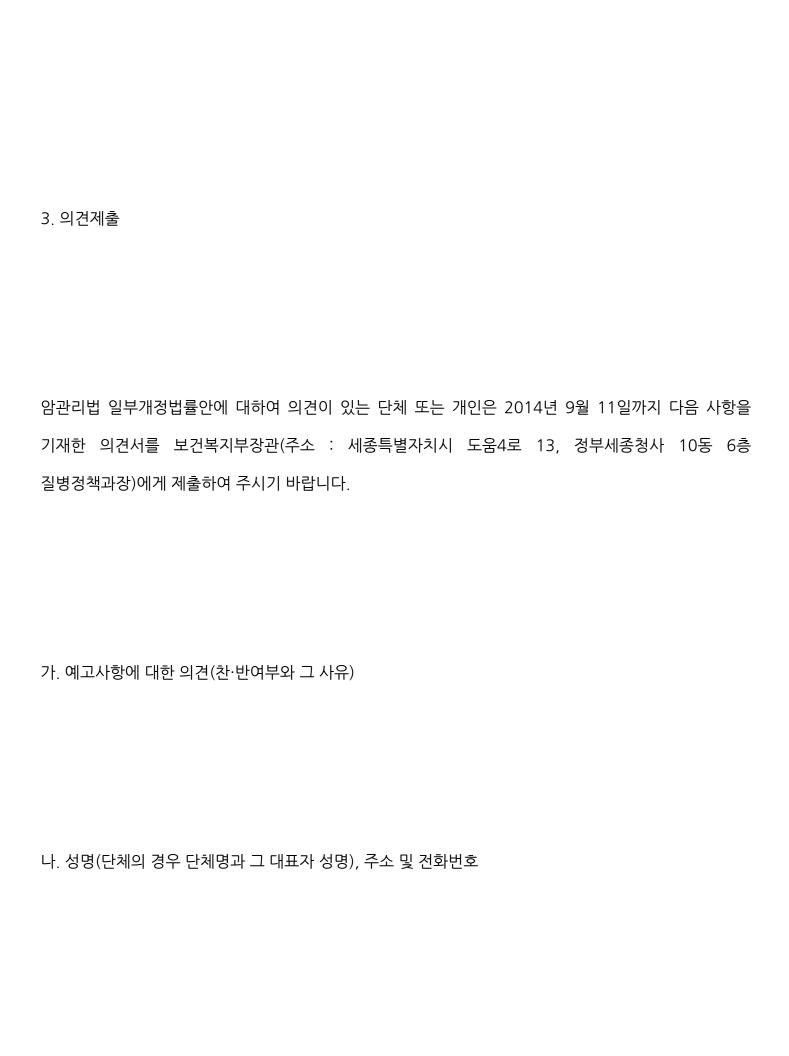
◉보건복지부공고제2014-452호					
암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	국민에게 미리	알려 의견을	수렴하고자	ユ	취지와
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·	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	날이 공고합니다.			
2014년 9월 1일					



2. 주요내용
가.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및 위반시 벌칙 조항 삭제(안 제49조 삭제 및 안 제51조)
1)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제한) 및 같은 법 제71조제2호
(벌칙)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시 처벌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임



다. 기타 참고사항
4. 기 타
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
www.mw.go.kr
)→자료실→법령자료→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(전화 044-202-2515 또는 2518,
팩스 044-202-392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법령안

첨부파일없음

규제영향분석서

첨부파일없음

참고·설명자료(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 등)

## 첨부파일없음